

24.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

대통령령 제15,969호 1998. 12. 31

개 정 이 유

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(1998. 12. 28, 법률 제5580호)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내향선원의 승선수당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이 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(령 제12조제10호).
- 나.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 등을 세법 적용상 제조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제조업 수준의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(령 제31조).
- 다. 접대비의 금액이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출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(령 제83조제6항).
- 라.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75퍼센트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였던 바, 그 적용범위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18월분의 평균임금을 한도로 하도록 함(령 제105조제2항).

- 마. 소득세를 지연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1일 1만분의 5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함(령 제146조의2).
- 바.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나, 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(령 제147조의3).
- 사.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의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양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바, 그 과세절위를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3년간 거래한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함(령 제157조제4항 및 제6항).
- 아. 등록법인협회(코스닥시장)에 등록된 대기업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활성화를 지원하되,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대량거래에 대하여는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(령 제157조제5항).
- 자.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 대신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·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그 대상자를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 및 도·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3억원미만,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미만, 부동산임대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미만인 사업자로 함(령 제208조제5항).